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638 발의연월일: 2022. 12. 2.

발 의 자:최연숙·권은희·허은아

金炳旭・윤두현・이태규

서정숙 · 백종헌 · 정경희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있고,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시·도지사는 보조할 수 있음.

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50:50으로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

려는 것임(제40조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까지의"를 "제5항까지의"로 한다.

⑤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	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
호) ① ~ ④ (생 략)	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판별
	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
	을 부담한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	<u>⑥</u> 제5항까지의
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	
치・운영 및 지정, 판별검사 및	
치료보호, 치료보호심사위원회	
의 구성・운영・직무 등에 관	
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	
으로 정한다.	